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08

발의연월일: 2021. 1. 11.

발 의 자:이동주·서동용·홍익표

고영인 • 맹성규 • 신정훈

윤관석 • 진성준 • 김성환

송갑석 · 윤영덕 · 이규민

유정주・양정숙・양이원영

박홍근 • 이학영 • 우상호

이소영 · 이용빈 · 이성만

민형배 의원(22인)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의 영업 업종 중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다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피해가 극심하여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경영자 및 그 가족의 생명이 끊어지는 비극적 사태가 속출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급박한 어려움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러나 매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지속 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빚과 적자가 누적되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 을 이들 피해 업종의 경영자는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타법례와 비교했을 때도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업종, 고위험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 폐업한 농가,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조차 방역을 위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코로나19 등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에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기 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경제 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하고 한시적 조치에 의한 즉각적인 입법효과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의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이하 "손실보상위원회"라 함)을 설치함(안 제5조).
- 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 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6조).
- 라. 손실보상위원회는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피해 소상공인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2조).
-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등이 피해기간 시작

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기간의 기준으로 경영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영악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실보 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보상금 환수 를 결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손실보상금의 지급결정 및 손실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소상공인등의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 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등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는 임대인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 카.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19조).

참고사항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 공인과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코로나19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서 SARS -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 2. "피해 소상공인등"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이하 "집합제 한조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3. "손실"이란 집합제한조치등으로 피해 소상공인등에게 발생한 영 업상 손실을 말한다.
- 4. "피해기간"이란 집합제한조치등으로 피해 소상공인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제한을 당한 기간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의 지원 과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손실보상위원회) ①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의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손실보상위원회(이하 "손실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 1.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된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 있는 임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단체에서 추천하는 손

실보상관련 전문가

- 4. 손실보상관련 경제분야 학계 전문가
-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상금액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 ⑤ 손실보상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소상공인등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손실보상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⑦ 그 밖에 손실보상위원회, 보상금액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6조(손실보상위원회의 기능) 손실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손실보상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판정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손실보상 지급결정 기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 3. 손실보상 지급결정의 취소,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의 변경 등에 과한 사항
-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 5. 제18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① 손실보상위원회는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피해 소상공인등의 단체) ① 피해 소상공인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 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피해 소상 공인등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급 신청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손실의 증빙서류 미비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나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금의 지급결정 기준 및 손실보상금 산정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손실 보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의무)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
- 2.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11조(손실보상금의 산정 근거) 손실보상금의 산정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영업이익과 집합제한조치등에 따른 피해기간의 영업이익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2. 그 밖에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12조(손실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결 정을 받은 자가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 실보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 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은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손실보상금의 지급취소 및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등의 피해기간 시작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기간의 기준으로 경영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영악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보상금 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제1호의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있는 경우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취소 및 환수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 소상공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손실보상금의 지급 취소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 1.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및 손실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 2.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환수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피해 소상공인등 금융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소 상공인등의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 소상공인등이 필요한 생계 및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 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 제18조(피해 소상공인등 임대료 감면에 따른 임대인 지원)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피해소 상공인등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는 임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소멸시효)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